

울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133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변론 종결 2020. 9. 23

판결 선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이라는 상호로 직 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2015. 8.경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던 'E 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및 2016. 12.경 일용근로자 인력을공급하였다.

다. D은 2016. 8.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초과되어 원고 회사로부터 인건비 등 현장경비가 지급되지 않자,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한 일용공들에게 매일 노임을 지급한 다음, 다음 달 초경 일일근로확인서를 모아 '월별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일괄 지급청구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7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총 56,350,000원의 노임을 부풀려 허위청구를 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금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 10. 노무비 미지급금 8,260,000원을 공제한 48,090,000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F이 원고 명의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2016. 9.분 임금을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4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증액 청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을 허위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F 등과 공모하여 출력 인원수와 단가를 높여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만 약식기소되었을 뿐,피고에 대하여는 2019. 4. 25.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